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2년 11월 12일

나.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2012년 12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 4. 10제정, ‘08. 4.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2)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가.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비스 분야 및 고용현장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내용을 보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총 3,818건이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8년 585건, 2009년 710건, 2010년 1,649건, 2011년 874건으로 월 평균 85.4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물 접근성 미비, 이동권 제한,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부분에서 접수율이 높았고 괴롭힘, 고용, 교육영역 순으로 나타남.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의 변화와 관련법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법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영역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
----------	-----

발의연월일 : 2012년 11월 5일
발 의 자 : 김길자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 4. 11제정, '08. 4. 11부터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인식과 경험은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합 의 : 사회복지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2. 10. 19 ~ 10. 25)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을 비롯한 영등포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구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5.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